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71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
-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관내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2025. 10. 31.字)에 따라,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
 역삼주간보호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낮 시간동안 일상생활지원부터 교육재활, 여가문화, 가족지원사업 등 전문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에 특화되고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
- 운영·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역삼주간보호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역삼주간보호센터	테헤란로8길 36	지상2층 (233.83㎡)	프로그램실, 주방, 사무실, 화장실, 창고

○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5. 11. 1. ~ 10. 31.)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소요예산 : 373,060,000원

○ 산출내역

구		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기본급	236,823,000	55.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시간외근무수당	21,888,600	5.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관리자 수당	2,400,000	0.6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가족수당	5,400,000	1.3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정액 급식비	9,360,000	2.2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상여금(명절휴가비)	23,674,200	5.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일용잡급(대체인력)	471,160	0.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타후생경비(복지포인트)	2,100,000	0.5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운영 지급기준	
		퇴직충당금	24,953,030	5.8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0,618,890	2.5	- 2025년 사회보험요율
			국민연금보험료	13,479,560	3.1	- 2025년 사회보험요율
			고용보험료	4,089,620	1.0	- 2025년 사회보험요율
	산재보험료		2,156,730	0.5	- 2025년 사회보험요율	
	장기요양보험료		1,375,140	0.3	- 2025년 사회보험요율	
	소계			358,789,930	83.6	
	② 운영비	여비(국내/국외)	700,000	0.2		
		교육훈련비	1,900,000	0.4		
		임차료	2,000,000	0.5		
		우편통신비	1,060,000	0.2		
유인물비		200,000	0.0			
소모품비		1,211,530	0.3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수용비 및 수수료		1,380,000	0.3			
시설비		600,000	0.1			
차량유지비		1,708,540	0.4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870,000	1.6			
기타	3,000,000	0.7				
소계			20,630,070	4.7		
③ 사업비			50,180,000	11.7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429,600,000	100.0		
수입원가	④ 이용료	43,680,000	77.3	- 사업수입 대비 100% 집행		
	⑤ 사용료	0	0.0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 무상사용		
	⑥ 기타수입	12,860,000	22.7	- 사업수입 대비 100% 집행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56,540,000	100.0		
위탁비용(A-B)			373,060,000	-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역삼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동의안의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

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 다만, 제출된 동의안 1쪽 추진 근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조 번호와 조 제목이 일부 오표기 된 것으로 보이고, 동의안 2쪽에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면서도 종료년도를 누락하였는바,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5. 11. 1. ~ 10. 31.)” 안건 제출 시 주의가 요구됨.

II. 주요 사항의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역삼주간보호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9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먼저 재위탁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현 운영법인과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0. 8. 1. ~ 2025. 7. 31.” 까지였고,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재계약(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5호)을 추진하였음. 그런데 재계약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재계약이 불가하게 되자 금번 재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재위탁 공개모집에 따른 기간 소요를 고려하여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기존 운영법인과의 위탁기간을 3개월(2025. 10. 31.까지) 연장하였는바, 재계약 부적격 사유 설명이 필요해 보임.

<역삼주간보호센터 재위탁 추진 경위>

- 25년 3월 05일 민간위탁 성과평가 계획 수립
- 25년 3월 19일 민간위탁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25년 3월 21일 민간위탁 성과평가위원회 결과 공고(적정)
- 25년 5월 07일 재계약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부적격)
- 25년 6월 19일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
- 25년 8월 13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적정)

(자료: 장애인복지과)

-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역삼주간보호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기타 장애인복

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정하는 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5. 11. 1.부터 5년간으로 제출되었음.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및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역삼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5. 3. 19. 이루어졌고 평가 결과 85.5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참고로, 2024년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지도점검 결과 역삼주간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4년 역삼주간보호센터 지도점검 결과>	
세부 지적내용	조치사항
1. 후원금 전용계좌 공고 누락	권고
2. 지정, 비지정 후원금 구분되지 않음	권고
3. 수의계약 서류 구비 미비	권고
4. 종사자 연가 일수 이월 사용	권고
5. 직원 법정 교육 수료증 개인별로 발급받아서 보관 및 관리	권고

(자료: 장애인복지과)

III. 종합의견

-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교육재활, 여가문화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기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인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현 운영법인에 대한 재계약 심사 ‘부적격’ 결과에 따라 금번 재위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탁 기간을 3개월(2025. 10. 31.까지) 연장한 상황이므로, 동의안 가결 이후 신속히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71
----------	-----

제출년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장애인복지과

1. 제안이유

- 가. 관내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2025. 10. 31.字)에 따라,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
-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

역삼주간보호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낮 시간동안 일상생활지원부터 교육재활, 여가문화, 가족지원사업 등 전문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에 특화되고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

- 운영·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역삼주간보호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역삼주간보호센터	테헤란로8길 36	지상2층 (233.83㎡)	프로그램실, 주방, 사무실, 화장실, 창고

○ 위치도

	
	<p>사진설명 역삼주간보호센터 외부 전경</p>
	<p>사진설명 역삼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p>
<p>지역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역과 인접한 중심상업지역 내 위치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도보 7분 거리 -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 인근에 병원, 복지관, 은행 등 생활 기반 시설 밀집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5. 11. 1. ~ 10. 31.)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73,060,000원

○ 산출내역

구		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기본급	236,823,000	55.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21,888,600	5.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관리자 수당	2,400,000	0.6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가족수당	5,400,000	1.3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정액 급식비	9,360,000	2.2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상여금(명절휴가비)	23,674,200	5.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일용잡급(대체인력)	471,160	0.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타후생경비(복지포인트)	2,100,000	0.5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운영 지급기준	
		노무보험료	퇴직충당금	24,953,030	5.8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료	10,618,890	2.5	- 2025년 사회보험요율
	국민연금보험료		13,479,560	3.1	- 2025년 사회보험요율	
	고용보험료		4,089,620	1.0	- 2025년 사회보험요율	
	산재보험료		2,156,730	0.5	- 2025년 사회보험요율	
	장기요양보험료	1,375,140	0.3	- 2025년 사회보험요율		
	소계		358,789,930	83.6		
	② 운영경비	여비(국내/국외)	700,000	0.2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교육훈련비	1,900,000	0.4		
		임차료	2,000,000	0.5		
		우편통신비	1,060,000	0.2		
유인물비		200,000	0.0			
소모품비		1,211,530	0.3			
수용비 및 수수료		1,380,000	0.3			
시설비		600,000	0.1			
차량유지비		1,708,540	0.4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870,000	1.6			
기타	3,000,000	0.7				
소계		20,630,070	4.7			
③ 사업비		50,180,000	11.7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429,600,000	100.0			
수입원가	④ 이용료	43,680,000	77.3	- 사업수입 대비 100% 집행		
	⑤ 사용료	0	0.0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 무상사용		
	⑥ 기타수입	12,860,000	22.7	- 사업수입 대비 100% 집행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56,540,000	100.0			
위탁비용(A-B)		373,060,000	-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 이라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성자 :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7급 이명례(☎ 3423-5896)